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수집 근거〉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56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미애 · 송옥주 · 전재수 · 부승찬 · 전종덕 · 신영대
박희승 · 박선원 · 오세희 · 한정애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 의안번호 : 495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6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법 제128조¹⁾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구서류의 형태와 그 제출 기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자료수집·조사 등의 규정에 추가하여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심사를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현행 「국회법」 제42조제1항²⁾은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전문위원이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65조제5항³⁾에 따라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략)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⑤·⑥ (생략)

3)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⁴⁾는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은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현장조사, 열람·수집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작동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의 협조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